

2021학년도 전기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생모집안내

-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Contents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지원자격	3
[4] 지원자격 인정 기준	5
[5] 제출서류	6
[6] 전형료	10
[7]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	11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2
[9] 지원자 유의사항	13
[10] 입학 및 대학생활 상담처	16
[11] 교통편 안내	17
[서 식]	
<서식 1> 입학원서	18
<서식 2>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19
<서식 3> 제출서류 목록표	20
<서식 4> 외국학교 조사표	22
<서식 5> 자기소개서	23
<서식 6> 학력조회 동의서	25
<서식 7> 사유서	26
<서식 8>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27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2020. 7. 21.(화) 10:00 ~ 7. 23.(목)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인터넷 접수 ■ 자기소개서 입력마감: 7. 24.(금) 17:00까지
서 류 제 출	2020. 7. 21.(화) ~ 7. 2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단계 합격자 (면접대상자) 발표	2020. 8.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및 시험장 안내: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
면 접 시 험	2020. 9. 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 재외국민전형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0. 9. 1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
합격자 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 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
추가합격자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5.(화)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 납부 ■ 합격 차수별 지정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합격자 최종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차액 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 1.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합격자 발표 등 모든 공지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를 통해 공지함
 3. 서류의 방문제출은 해당 기간 중 우리 대학 입학처(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접수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인원 총괄표

계열	모집단위	전형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새터민
			모집인원	최대 선발인원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32		32	모집단위 별 약간 명	모집단위 별 약간 명
	사회과학계열			32		
	경영학			21		
	글로벌리더학			5		
	글로벌경제학			5		
	글로벌경영학			5		
	영상학			3		
	의상학			3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33		32	모집단위 별 약간 명	모집단위 별 약간 명
	전자전기공학부			20		
	공학계열			33		
	소프트웨어학			15		
	건축학(5년제)			4		
	스포츠과학			3		
의예	의예	2		2		-

-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임 (인증기간: 2017. 3. ~ 2021. 2.)
- ※ 계열별 전형요소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 (단,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및 새터민전형은 별도 선발인원 제한이 없으며, 우리 대학에서 정한 최소 학업역량을 갖춘 자 선발
- ※ 상기 모집단위명 및 선발인원은 우리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광역 모집단위 설치 학부/학과 안내

계열	모집단위	설치 학부/학과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유학·동양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계열	행정학, 정치외교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학, 아동·청소년학, 경제학, 통계학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융합생명공학
	공학계열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

- ※ 광역 모집단위 입학생은 '대계열입학생 학과진입지침'에 따라, 교양기초교육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학부/학과에 진입하게 됩니다. 학부/학과 진입은 본인의 희망과 1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설된 학부/학과는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이수하여 2개 또는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 제도를 시행합니다.

[3] 지원자격

1. 재외국민전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지원자의 중·고교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해외근무/사업/영업자의 재직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함

※ 지원자의 재학기간은 3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혹은 역년으로 3년(1,095일)을 충족해야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2020. 02. 20.))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다음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 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21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인정(예정)자
- 나. 어학능력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어학능력기준 폐지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판단 기준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24학기)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외 1개 국가에서 10년제 또는 11년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11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함

3. 새터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21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인정(예정)자

※ 2022학년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어학능력기준 변경예고

- 어학능력기준 폐지

[4] 지원자격 인정기준

1. 외국학교

-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 나.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새터민 전형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에 한해 인정합니다.
- 라.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단,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3국 수학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마. 유아원,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 재학기간

- 가.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12년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학제 차이 또는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 결손 및 학기 중복, 월반, 조기졸업 등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해석은 우리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3.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 가. 외국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출국일은 외국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 나. 해외 파견 재직자의 근무기간: 해외 지사(사무소)로의 발령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현지 취업자의 근무기간: 입사 및 퇴사 일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라.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 해당국 정부의 영업허가 승인 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 유학, 안식년,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기타

- 가.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예: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우리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5]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입학원서 [서식 1]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서식 2]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 3]	- 서류 제출여부 표기 후 제출
외국학교 조사표 [서식 4]	- 재학한 모든 해외학교 기재 - 외국학교마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방학기간 제외)
자기소개서 [서식 5]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별도로 출력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학력조회 동의서 [서식 6]	- 지원자 자필 서명하여 제출 -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재학한 모든 외국학교마다 한 부씩 작성
초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 국내 학교 또는 교육부장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사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생의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사유서(해당자) [서식 7]	- 해당자에 한함(학기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제3국 수학 및 기타) - 해당 학교(기관) 증빙자료 미첨부시 사유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재학·성적·졸업증명서의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추후 별도 기간에 제출할 수 있음
- ※ 해외 고교 출신 학생 중 학생에게 직접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고교에서 우리 대학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여도 무방함(이러한 경우,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추후 별도 기간에 제출함)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문의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02)2002-0251~2
-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외국학교의 경우, 제출 서류에 학생의 재학기간(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School Profile 또는 Academic Calendar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2.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지원자)
	3. 여권 사본(부모, 지원자)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부모, 지원자) [서식 8]
	5.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지원자)
	6. 해외근무자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7.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8.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9.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10. School Profile 또는 School Calendar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2. 여권 사본(지원자)
	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학생) [서식 8]
새터민	1.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2.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3. 학력인정증명서

3. [선택]추천서 및 출신학교 School Profile

- 가. 추천서: 별도 지정된 서식은 없으며 출신학교 서식 또는 자유양식으로 제출 가능
- 나. School Profile 또는 School Calendar(재외국민 지원자는 필수제출): 해당 외국학교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선택]활동 증빙자료

- 가.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 高等学校招生考试(高考), SAT, ACT, AP, A-Level,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등
- 나. 고교 재학 중 수상·봉사활동 실적, 자격증
- ※ 활동 증빙자료 관련 안내사항
 - 활동 증빙자료는 10개 항목, 총 2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A4 규격이어야 함(양면복사 금지, A4보다 큰 경우에만 A4 크기로 축소 복사 가능)
 - 사진·USB 등 비문서 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며, 추천서 및 School Profile은 20매 분량에서 제외함
 - 하나의 성적이 여러 장으로 발급되는 공인성적의 경우 서류가 1매를 초과하여도 1매로 인정
 - 유사한 상장을 여러 장 제출할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
 - 제출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음
 -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는 제출할 수 없음

5.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서류 제출 관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증명서, 해외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은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나,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 입학처 접수담당자에게 원본대조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학교의 원본대조 확인도장도 인정. **단,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 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서류 발급기한 관련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증명서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은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서류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서류 발송 관련 안내사항

- 외국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우리 대학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여도 무방합니다(이러한 경우,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추후 별도 기간에 제출함).
- 해외 공인성적증명서 등은 주관기관에서 우리 대학으로 직접 발송(score reporting)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 화면 캡처본(ID, PW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기관번호 - College Board: 7081 / ETS: 5972 / IB: 003833)
-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직접 발송한 서류는 제출서류 목록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우리 대학을 수신인으로 하여 학교 또는 기관에 직접 서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지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라.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확인)

- 국내 학교 또는 교육부장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사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재학·성적·졸업증명서의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추후 별도 기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문의: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02)2002-0251~2

마. 출입국사실증명서

- 복수국적, 외국 국적 취득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여권별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 입국 또는 해외 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 제출)

바. 사유서

- 학기 결손, 학기 중복, 월반, 조기졸업, 휴학,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서식 7] 및 해당 학교(기관)의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 및 중복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부모 이혼, 사망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천서, 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 입학처에서 전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 제출기간: 2020. 7. 21.(화) 10:00 ~ 7. 24.(금) 17:00

- 기간 중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접수함
- 우편접수: 7. 24.(금) 우편소인까지 인정함

자. 서류 제출처

- (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1층 입학처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Tel. 02) 760-1000, Fax. 02) 760-1350
- Admissions Office, 600th Anniversary Hall,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6] 전형료

1.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비 고
재외국민전형	200,000원	1단계 불합격자 50,000원 반환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제외)	150,000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의예과, 스포츠과학과)	200,000원	1단계 불합격자 50,000원 반환
새터민전형	50,000원	

2. 전형료 일부 반환

: 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7]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계 열	선발방식	서류평가	면접시험	합 계
재외국민	전 모집단위	1단계	100	-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100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	100
	의 예 스포츠과학	1단계	100	-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100
새터민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	100

2. 평가방법

가. 서류평가

-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체류국가의 대학입학시험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자료를 종합 심사함

나. 면접시험 안내

- 면접대상자 및 시험장 발표: 2020. 8. 28.(금)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admission.skku.edu>)
- 면접시험 일자: 2020. 9. 5.(토)
- 면접내용: 인성 및 적성 평가

3.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기준

- 가. 재외국민전형(인문계, 자연계): 계열별 최종 선발인원의 3~5배수 내외
- 나. 재외국민전형(의예):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내외
- 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예, 스포츠과학): 적정인원(단,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업역량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

- 가. 재외국민전형: 계열별 전형요소별 취득 성적 합산 총점 순으로 선발 (단,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예, 스포츠과학): 전형요소별 취득 성적 합산 총점 순으로 선발 (단,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업역량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예, 스포츠과학 제외) 및 새터민 전형

: 서류평가 취득 총점이 우리 대학이 정한 최소 학업역량을 충족하는 자 전원 선발

라. 동점자 처리기준

-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 면접시험 취득 성적이 높은 자, ② 서류평가 취득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함
- 기타 동점자 처리기준은 우리 대학 입학처에서 정함
(단, 연령, 성별, 재학기간 등은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하지 않음)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2020. 9. 15.(화)

: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에서 발표

2. 합격자 등록

: 합격자별 지정 가상계좌에 소정의 등록(예치)금 납부

3.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 2020. 12. 28.(월) ~ 12. 30.(수) (납부 가능 시간: 10:00 ~ 16:00)

4. 추가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 2020. 12. 31.(목) ~ 2021. 1. 5.(화) (합격차수별 지정기간 내 납부)

5. 등록금 차액 납부 - 예치금을 제외한 차액 납부

: 2021. 2. 8.(월) ~ 2. 10.(수) (납부 가능 시간: 10:00 ~ 16:00)

※ 지정된 기한까지 등록예치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9]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본교가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접속해야 함)
- 나.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다. 원서접수 후, 필수서류를 2020. 7. 24.(금) 17:00까지 입학처로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서류가 누락된 자는 결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라.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반환은 본 모집요강의 전형료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 마. 지원자 인적사항에 대한 판단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접수 완료 이후 입학원서 기재 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전형료 결제 전) 작성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 입학 원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자 인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에서 지원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함
 -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음
- 사. 유사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누락, 오기 및 기타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자기소개서

- 가.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전형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나.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리 작성·표절·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가.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우리 대학 규정에 따라 입학 및 학사 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나. 우리 대학은 입학 원서접수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어플라이’에 위탁하여 진행함에 따라 원서접수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일부를 해당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망모집단위, 출신학교명, 입학 및 졸업일, 지원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자 이메일, 긴급연락처,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보호자 성명 및 국적, 근무지, 기타 인적사항 등

4.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 가.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지원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됩니다.
- 나.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한 대학의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경우도 각각 지원횟수에 포함됨
 - 동일한 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경우도 각각 지원횟수에 포함됨
 -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각각 지원횟수에 포함됨
(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은 제외)
- 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은 제외합니다.
- 라.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마. 2021학년도 3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2021학년도 9월 입학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바. 수험생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기준을 위반한 수험생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합격 이후라도 합격과 입학은 무효 처리합니다.

5. 추가합격 및 등록포기

- 가. 선순위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포기할 경우, 또는 선순위 예비후보자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정순서에 따라 후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나. 추가합격자 발표는 차수에 따라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차수별 추가합격 발표일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다.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포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라. 이미 대학에 등록한 자가 추가합격(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6. 기타

- 가. 합격자 발표 등 모든 공지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를 통해 안내합니다.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예치 등록의 경우에도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다. 부정행위에 대한 시험 무효 또는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제재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라 함은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출서류 위변조, 입학원서 등에 허위사실 기재, 경쟁률을 높이려는 목적 등의 부당한 허위 지원, 전형별 지원자격 위반, 수험 부정행위, 대리 시험,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경우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입학전형 부정행위자는 그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우리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을 무효로 하며,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우리 대학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정행위가 우리 대학이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무효일 또는 입학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우리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라. 지원자격 위반자(고교 졸업예정자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등)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 마.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등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함으로써 지원자격 관련 학력검증을 위한 학력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 후 진행되는 학력조회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바. 학력조회 회신결과가 원서 및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회신이 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입학성적이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격 결격자로 판정된 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 아. 입학전형 평가의 모든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자. 장애 등 사유로 수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입학처(☎02-760-1000)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등 수험생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과 기준은 우리 대학에서 정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장애인 수험생 시험운영 기준)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을 순차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차.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어학능력기준 청각장애인 적용기준: 청각장애인의 경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인 점수 환산비율 기준(각 공인영어시험별 기준점수 대비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비율)을 준용하여 우리 대학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타. 입학전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 입학 및 대학생활 상담처

1. 입학관리팀: 입학 전반에 관한 안내

- 홈페이지: <https://admission.skku.edu/>
- 이메일: fore@skku.edu
- 전화: +82-2-760-1000
- 팩스: +82-2-760-1350
- 주소: (03063)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1층

2. 대학생활 관련 문의처

상담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입학 안내 전반	입학관리팀(https://admission.skku.edu)	02) 760-1000 FAX 02) 760-1350	
등 록	재무팀	02) 760-1125	
장 학	학생지원팀	02) 760-1075~6	
학사안내전반 (졸업·수강·복수전공·학적· 휴학·복학 등)	학사운영팀	1811-8585	
기숙사 http://dorm.skku.edu	명륜학사(인문사회과학캠퍼스 기숙사 행정실) 봉룡학사(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 행정실)	02) 760-0163, 0164, 0167, 0168 031) 290-5181~6	
교직 이수	사범대학	02) 760-0963	
대계열 학과진입, 교양교육	학부대학	02) 760-0991~3 031) 299-4221~3	
전공 안내 전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유학대학	02) 760-0913~6
		문과대학	02) 760-0913~6
		사회과학대학	02) 760-0935
		경제대학	02) 760-0942
		경영대학	02) 760-0958
		예술대학	02) 760-0905, 0933
		글로벌리더학	02) 760-0191~2
		글로벌경제학	02) 760-0040, 0042
		글로벌경영학	02) 760-0034
	자연과학캠퍼스	자연과학대학	031) 290-5801, 5803, 5804
		정보통신대학	031) 290-5827, 5863
		소프트웨어대학	031) 299-4100~2
		공과대학	031) 290-5813
		생명공학대학	031) 290-5801
		스포츠과학대학	031) 299-6920, 6930
의과대학	031) 299-6021, 6025		

[11] 교통편 안내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s://www.skku.edu/>) - 대학정보 - 캠퍼스 안내] 참고
<https://www.skku.edu/skku/about/campusInfo/location.do>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 도보 : 4번 출구(15분~20분 소요)
- 셔틀버스 : 1번 출구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음)

[지하철 3호선 안국역]

- 마을버스(종로 2번) : 2번 출구

[시내버스]

- 간선버스(파랑) :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공항버스]

- 602-1(6011)



■ 자연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 도보 : 2번 출구(10~15분 소요)

[일반버스]

- 62-1, 82-2, 39

[시외버스]

- 7790, 7800, 3003



성균관대학교 입학원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입 학 구 분		신입학				사 진
전 형 유 형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모 집 단 위						
지 원 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성 별			
여 권 번 호						
고 등 학 교 정 보	학 교 명					
	소 재 국 가					
	학 교 주 소					
	전 화 번 호		홈 페이지			
	F A X		E - m a i l			
연 락 처	지 원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접수확인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본 서식은 인터넷 접수를 위한 견본입니다. 입학원서는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입 학 구 분	신입학		
전 형 유 형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지 원 자 격			
모 집 단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교명	재학기간		국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년·학기																									
	기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학교 소재 국가: _____										재학 년수: __년 __개월															
~																												
			학교 소재 국가: _____										재학 년수: __년 __개월															
~																												
			학교 소재 국가: _____										재학 년수: __년 __개월															
~																												
			학교 소재 국가: _____										재학 년수: __년 __개월															
~																												
			학교 소재 국가: _____										재학 년수: __년 __개월															

※ 특이사항

기간	학년/학기	사유

- 학년·학기 결손 및 중복, 월반, 조기졸업, 휴학,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 사유 등 기재
- 사유서 및 해당 학교(기관) 공식서류 추가 제출 대상([서식7] 참조)
: 학기결손 및 중복 1학기 이상, 월반, 조기졸업, 휴학,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 등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단,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 및 중복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인)

제출서류 목록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 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지원자격	
모집단위	

1. 필수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1	입학원서	
2	제출서류 목록표	
3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4	외국학교 조사표	
5	자기소개서	
6	학력조회 동의서	
7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8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9	중학교 재학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10	중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11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12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영사확인
13	사유서(해당자: 학기 결손 및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기타)	서식 7
		증빙자료

2. [필수]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1		
2		
3		
4		
5		
6		
7		
8		
9		
10		

3. [선택]추천서 및 School Profile 또는 School Calendar

번호	서류명	제출여부
1	추천서	
2	School Profile(School Calendar)	

4. [선택]활동 증빙자료(10개 항목 이내, 제출한 모든 증빙자료의 합이 20페이지 이내여야 함)

번호	서류명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합계	<p style="text-align: center;">총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료가 10개 항목 또는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증빙자료 목록 순)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축소복사, 양면복사한 자료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하나의 성적이 여러 장으로 발급되는 공인성적의 경우 서류가 1매를 초과하여도 1매로 인정 	

외국학교 조사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전 형 유 형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지 원 자 격		모 집 단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교명	학기 시작 및 종료일(방학기간 제외)				주소 및 연락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학년제)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학교 주소: 전화: E-mail: FAX: 홈페이지: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인)

※ 해외 소재 초·중·고교만 기재하고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3학기, 4학기의 경우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학교의 경우에만 기입하면 됩니다.(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학기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 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재외국민전형 /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 / 새터민전형
지원자격	
모집단위	

○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작성방법>

- ①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입학처에서 일괄 출력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출력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②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필수 동의사항>

- ①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전형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색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우리 대학이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도 지정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자기소개서 내용 중 허위사실 기재, 표절, 대리 작성, 위조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인터넷 접수를 위한 견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별도의 출력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 5] 인터넷 접수용 견본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새터민전형]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 지원 모집단위를 선택한 이유와 학업 및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3. 다음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 재학 기간 중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및 느낀 점
-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역경극복을 위해 노력한 사례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동의서)
SUNGKYUNKWAN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s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Tel: +82-2-760-1000
Fax: +82-2-760-1350
fore@skku.edu
<https://www.skku.edu>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

I have applied to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Sungkyunkwan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tudent Name	
Date of Birth	
Student ID	
School Name	
School Phone No.	
School Fax No.	
School E-mail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Date of Withdraw)	

Date: _____

Sincerely yours,

Signature: _____

사 유 서

2021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 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사유명 (해당사항에 체크)	학기결손	학기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제3국수학	기타
세부사항(횟수 및 기간 구체적으로 기재)								
<p>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인) 본 인: (인)</p>								

[사유서 제출 방법]

- 해당 사유 표기 후 하단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